

#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896
----------	-----

제출년월일 : 2000. . .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폐합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다. 기금의 용자대상·용자금액·상환기간·이율 등을 명시하고, 용자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내지 제9조).
- 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 마.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 바.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함(안 부칙 제2항).

사.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봄(안 부칙 제3항).

제정조례안 : 별첨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사전예고

- 입법예고 : 2000. 8. 12 ~ 8. 21

기타참고사항

-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 안산시 저소득주민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저소득주민(이하 “저소득주민”이라 한다)의 자립·자활을 위한 안산시 저소득주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용자대상) ①기금의 용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일반용자금 :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2. 학자금용자금 : 저소득주민의 직계비속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재학생의 학자금
- ②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용자금액·상환기간·이율 등) ①기금의 용자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자금 : 세대당 오백만원이내
2. 학자금용자금: 세대당 이백만원이내

②용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용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중단할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2년 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편입학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연장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연체이율 : 용자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5퍼센트의 연체이

자를 정수한다.

제6조 (용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주지 동장(출장소장)의 추천서
2. 재학증명서 (학자금 용자에 한함)
3. 용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제7조 (용자통지)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기금의 용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자금의 회수등) ①시장은 기금의 용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용자금을 사용한 때
2. 안산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9조 (감면조치) 시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용자금(이자포함)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복지사업1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복지사업1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방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 1.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용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용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금의 융자기간·이율·상환방법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기금의 이입)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안산시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조례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소 관 실 과		사회여성과
임 안 자	실 과 명 직위. 성명	사회여성과 과장. 임영선
	담당(팀장) 직위. 성명	복지사업1팀 팀장. 이성천
	담당자 성명. 전화	이성천 (행정2868)

## 안산시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96
----------	-----

제안년월일 : 2000. 9. 25.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회

### 1. 수정이유

- 안산시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의 일반 응자금을 상향조정하고 연체이율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 2. 주요골자

- 일반 응자금 세대당 “오백만원” 이내를 “일천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 제1항 1호)
- 응자금 연체이율 “연15%를 ”연12%로 하향 조정함. (안 제5조 제3항)

##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저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항 1호중 “오백만원”를 “일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15퍼센트”를 “12퍼센트”로 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융자금액 · 상환기간 · 이율등)①기금의 융자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일반융자금 : 세대당 <u>오백만원</u> 이내</p> <p>2. (생략)</p> <p>②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생략)</p> <p>③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u>15퍼센트</u>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p>	<p>제5조(융자금액 · 상환기간 · 이율등)①..... .....</p> <p>1. 일반융자금 : 세대당 <u>일천만원</u> 이내</p> <p>2. (원안과 같음)</p> <p>②..... .....</p> <p>1.~2.(원안과 같음)</p> <p>③ 연체이율 : ..... ..... <u>12퍼센트</u>..... .....</p>